

전라북도 장수군 공고 제2016 - 585호

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(영업허가 등)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(청문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의 규정에 의거,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,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6년 7월 22일

장 수 군 수



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
2. 근거법규 : 식품위생법 제37조(영업허가 등) 및 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| 업 종 | 업소명 | 대표자 | 소재지 | 위반사항 | 행정처분 내 용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일 반 음식점 | 대성가든 | 최순이 |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계길 7-3 | 6개월 이상 휴업 및 영업장멸실 | 영업소 폐 쇄 |
| | 삼화순두부 | 김대길 |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천변길 77 | | |

4. 공고기간 : 2016. 7.22. ~ 2016. 8. 5.(14일간)
5. 청문일시 : 2016. 8. 8.(월) 14:00 ~ 16:00
6. 청문장소 : 전라북도 장수군청 상황실
7. 유의사항

위 청문일자에 전라북도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시어 청문에 참석하시고,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,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. 문 의 처 : 전라북도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(☎ 063-350-2356)